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0 - 225호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225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선박 대형화 추세와 항만 이용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선박 항행 최고속력 제한, 항법과 항로 변경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항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가 항계 바깥 구역인 신항 가덕수도와 최고속력 지정 근거 법령은 「해사안전법」 제31조이나, 현행 규정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기입(안 제1조, 제17조)

나. 충돌 위험성이 높은 해역의 항법 · 항로 변경(안 제8조, 제12조)

다. 선박 대형화 추세 등을 감안한 신항 내 최고속력 제한과 부산항 전체 최고속력 표기 방식 명확화(대지속력으로 통일), 남외항 정박지 시설 능력 조정(안 제3조, 제17조)

라. 기타 자구 수정(항행, 통항 등 → 운항으로 통일: 제12조 제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참조 : 해양수산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 「알림마당-우리청소식-고시」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부산 동구 충장대로 3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전자우편 : kwonbokyeun@korea.kr
- 전화/팩스 : 051-609-6554/6520